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11139 판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찬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준

변론 종결2023. 8. 30.

판결 선고2023. 9. 2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125,034,8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034,884원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80,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갑 1, 갑 10호증의 각 1, 2, 갑 5, 7, 8, 9, 11호증의 기재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경 주식회사 C로부터 경북 예천군 D건물의 8층 스크린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와 9층 휘트니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80,190,000원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19. 1심에서 승소한 사실, 주식회사 C은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후 2021.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주식회사 C은 2021. 3. 17. 당시 채무초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채권 80,19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합산하면 125,034,884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0억 원 이상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E과 피고의 대표자와의 관계,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피고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의 채권이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생긴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은행 계좌에 부동산 매수대금 8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채권을 충족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병률

별지